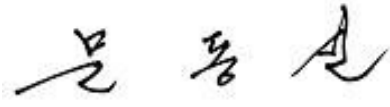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2호

##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군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1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표2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추진비의 공개)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86조부터 제89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3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3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군산시의회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존중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별표2]

# 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별표3]

## 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li> <li>- 면허취소</li> <li>- 면허정지</li> <li>○ 범법행위</li> <li>- 금고 미만 확정판결</li> <li>○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li> <li>-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li> <li>○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li> <li>○ 성폭력, 성희롱</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성 유지 등</li> </ul>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li> </ul>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li> </ul>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피의무 위반</li> </ul>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li> </ul>	공개사과
7. 회의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 할 때</li> </ul>	경고, 공개사과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1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68호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무기명투표”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행정혁신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274호

## 군산시 행정혁신 운영규정 폐지규정

군산시 행정혁신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업무혁신 연구모임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275호

### 군산시 업무혁신 연구모임 운영규정 폐지규정

군산시 업무혁신 연구모임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731호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폐지조례안

### 1. 폐지이유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을 위한 개항100주년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던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목적 달성(1999.5.1)으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는 폐지한다.

### 3. 의견제출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qbqb11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0-1763호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폐지근거

- 「농지법」 개정(2009. 5. 27공포,2009.11.28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주요내용

-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 3.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농정과 [ 전화(063)450-4373 팩스(063)452-8167]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계장 임철혁[전화 (063)450-4373], 담당자 김주희[전화(063)450-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772호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안

### 1. 제안이유

2014 전라북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에 대하여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한시조례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는 폐지한다.

### 3. 의견제출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4254, FAX : 452-6399, 전자우편 : k23soo@korea.kr)

####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계 (전화 : 450 - 42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안**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고시 제2010 - 122호

## 고 시

군산 미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05일

## 군 산 시 장

## 1. 군산도시관리계획(미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1	미룡동 903-1	용 도	공공청사 (파출소)	공공청사 (주민복지·자치센터)	
		건 폐 율	60%	60%	
		용 적 율	250%	250%	
		높 이	5층	5층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공공청사	파출소	미룡동 903-1	12,271	감) 11,443	828	전북고27 9 (00.7.7)	오기 정정

## 2.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0-124호

## 도시계획시설(운동장: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생활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11월 1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운동장:생활체육시설)

2) 명 칭 :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		실시계획 (㎡)			비 고
		당 초	변 경	기 조성	금 회	미 조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7,213	30,175	17,213	12,962	-	
소 계			30,175		12,962		

4.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9. ~ 2012.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계획실음 생략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대야면 산월리	784-17	답	63	6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643 계룡아파트6-206	김병찬	
2	"	784-18	답	85	8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6-7	정은하	
3	"	784-19	답	2	2	경남 김해시 삼방동 234-7 효동빌라 401	최광숙	
4	"	784-20	답	289	2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29. 301호	조성희	지분 109/327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아파트 102-606	윤정균	
						충남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492	박순자	
5	"	784-15	답	463	46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9-1 삼호2차 사원임대아파트 207-706	박희용	지분 1/2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89-15 401호	김용희	
6	"	784-21	답	166	16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10 목련아파트 105-902	박현정	
7	"	785-1	전	69	69		군산시	
8	"	790-1	전	67	67		군산시	
9	"	791-1	전	602	602		군산시	
10	"	792-4	전	571	571		군산시	
11	"	792-5	전	21	21		군산시	
12	"	792-6	전	762	762		군산시	
13	"	795-8	답	612	612		군산시	
14	"	795-7	답	3,669	3,669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624-3	두종석	
15	"	796-15	전	324	324		군산시	
16	"	796-17	전	553	553		군산시	
17	"	796-16	답	2	2		군산시	
18	"	815-5	전	372	372		군산시	
19	"	985-21	도	61	61		국 (농수산부)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20	대야면 산월리	985-22	도	144	144		국 (농수산부)	
21	"	793	답	519	519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28	김성옥	
22	"	794	답	2,579	2,579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28	김성옥	
23	"	813	답	298	298		군산시	
24	"	814	전	151	151		군산시	
25	"	815-6	도	55	55		군산시	
26	"	813-3	답	314	314		군산시	
27	"	813-4	도	106	106		군산시	
28	"	814-3	도	31	31		군산시	
29	"	795-1	체	3,735	3,735		군산시	
30	"	795-4	체	3,313	3,313		군산시	
31	"	795-5	체	3,735	3,735		군산시	
32	"	795-6	체	1,907	1,907		군산시	
33	"	796-12	체	823	823		군산시	
34	"	803-1	체	1,368	1,368		군산시	
35	"	804	체	281	281		군산시	
36	"	805	체	760	760		군산시	
37	"	806-1	체	608	608		군산시	
38	"	982-1	체	380	380		군산시	
39	"	985-17	체	166	166		군산시	
40	"	985-18	체	149	149		군산시	
계					30,175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고시 제 2010-1호

##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시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련서류는 군산시 수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일

### 군 산 시 장

#### 1. 수도정비 기본계획 개요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비 고
계획인구(인)	267,717	282,674	316,645	317,444	
급수보급률(%)	94.5	95.9	96.8	96.9	
급수인구(인)	252,981	271,051	306,601	307,620	
소비량원단위 (Lpcd)	258	264	270	276	
유수율(%)	65.0	71.0	77.0	83.0	
급수량원단위 (Lpcd)	373	348	330	311	
일 최대수요량(m <sup>3</sup> /일)	257,300	301,900	554,000	547,100	
생활용수	118,200	118,500	126,900	120,000	f=1.25
공업용수	129,900	168,900	376,200	376,200	
침전수	113,400	152,400	359,700	359,700	
원수	16,500	16,500	16,500	16,500	
기타용수	9,200	14,500	50,900	50,900	생활용수

2. 관련서류 : 군산시 수도과(450-45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군산시 공고 제2010 - 1749호

## 공 고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내초동 157-3번지 일원에 대하여 내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

군 산 시 장

## 1. 주요내용

-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9,891	-	89,89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89,891	89,891	100.0	
자연녹지지역	23,622	감) 23,622	-	-	
생산녹지지역	66,269	감) 66,269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내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초동 157-3 일원	-	증)89,891	89,891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계재생략)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계재생략)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계재생략)

<용도별 건축물 허용(권장)용도 구분>

구분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가구	획지			
A (주거용지)	A1 ~ A12	.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단, 지하층 주거 용도 불허)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용적률의 50%이내)	-	. 허용 및 권장 용도 외의 용도 . 가설건축물 설치 불허
B (공공시설용지)	작1 마1 주1 어1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노유자시설(마을회관) .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간이공작물(공작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농·림·수산물의 건조장에 국한)	-	. 허용 및 권장 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기준>

구분	건폐율(%)	용적률(%)
내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0	150

<건축물 높이에 관한 기준>

구분	계획내용	층고계획
주거용지	. 대상지 주변의 경관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도시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도록 최고층수를 제한	최고 3층 이하
공공시설용지	.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의 공공시설 또한 도시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도록 최고층수를 제한	최고 3층 이하

※ 관계도서 : 게재생략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주민의견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과 관련된 주민 의견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0-4446)/공영사업과(☎ 063-450-4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42호

## 2010년도 만경강유역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실시 공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위해 철새들의 먹이 및 휴식공간(쉼터)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보전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사업시행지침(환경부)
- 대상지역 : 만경강 유역(국도 21번, 26번과 만경강 사이)
  - 전 지역 : 옥구읍, 회현면, 옥서면
  - 일부지역 : 옥산면, 대야면, 개정면, 미성동, 나운3동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4월말까지
- 사업유형 : 경작 관리계약(보리, 밀 경작)
-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10. 11. 4 ~ 2010. 11. 17
  - 신청장소 : 농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자 또는 농지 임대 계약자중 보리, 밀 경작자
    - ※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에서 제외)
  - 신청방법 : 계약 신청서(해당 읍면동사무소 비치) 제출
    - ※ 구비서류 : 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등록증, 임대계약서(토지주의 확인필)
    - ② 계약자 본인 통장사본
- 기타사항
  - 계약체결방법 : 추진협의회 협의 조정 후 대상지역 주민과 계약 체결
  - 인센티브지급 : 먹이제공 정도에 따라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후 지급
- 문 의 처 : 철새생태관리과(☎453-7213, 7214)

2010년 11월 일

군 산 시 장

전북군산소방서 공고 제2010-03호

##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도)보에 공고합니다.

군 산 소 방 서 장

2010년 11월 08일

### □ 공고사항

1. 등 록 번 호 : 전북 군산 제2010-3호
2. 업 체 명 : (주)여정
3. 대 표 자 : 안현영
4. 영 업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04-4번지
5. 업종 및 등급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등 록 일 자 : 2010. 11. 08. 끝.